

이번 법인세신고부터 12월말 법인에게 최초 적용되는 개정세법 CHECK POINT

(국세청, 2007. 2.)

<목 차>

I. 법인세법 분야

- ①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대상 확대
- ②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
- ③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 ④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 ⑤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
- ⑥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⑦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
- ⑧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 ⑨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 ⑩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 ⑪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⑫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 ⑬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II.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 ①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 ③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
- ④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 ⑤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⑥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 ⑦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 ⑧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 ⑨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등
- ⑩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
- ⑪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추가
- ⑫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 ⑬ 소비자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
- ⑭ 일몰 도래로 올해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별 첨] 법인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 전산분석 사전안내 항목

I. 법인세법 분야

①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법 §25, 법령 §41)

-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하므로 2006.2.9. 이후 경조사비 지출분부터 증빙수취 예외 범위를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
-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아프리카 등)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

* 법정증빙서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②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 (법법 §24)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100%)을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허용

2005년 이전	2006년 ~ 2008년	2009년 이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75%	소득금액의 50%

-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소득금액의 50% 한도)와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 한도)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특례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 등

③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법령 §60)

-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기업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고,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허용

■ 참 고

• 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구 분	총급여액 기준 한도	추계액 적용비율
① 2006. 2. 8.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직원 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40%
②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 는 사업연도까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에게 지 급한 총급여액의 5%	35%
③ 상기 ②의 최종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30%

④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법칙 §15, 별표5)

○ 건축물 부속설비에 대하여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40년)가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보아야 하므로,
 - 2006. 3. 14.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4~25년)의 적용을 허용

* 건축물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⑤ 기부금영수증발급대상 작성·비치 (법법 §76 ⑩, 법법 §112의 2)

○ 기부금공제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사실과 다른 금액의 1%) 부과

⑥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법법 §121 ⑤)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⑦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 (법법 §18의 2, 3)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하되, 자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 이상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 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도 익금불산입 허용

⑧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법령 §37)

○ 2006.2.9. 이후 현물기부하는 분부터 시가로 평가하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

⑨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법령 §72)

○ 2006.2.9. 이후 취득하는 국·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감가상각 등에 의한 손금계상 인정

⑩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법법 §42 ③, 법령 §78)

○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투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6.2.9.부터 내국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 인정

■ 참 고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액손실 처리(기준서 제8호)

□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그 감액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함(문단 33)

→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

구 분	회수가능가액의 평가	감액손실의 인식액	감액손실의 회복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취득원가법	지분증권 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공정가액법	공정가액	취득원가 - 공정가액 - 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채무증권) * 공정가액법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상각 후 취득원가 - 회수가능가액 - 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법	기대현금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상각후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㉑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법 §29)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되,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동일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분)으로부터의 배당 제외

㉒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법령 §81 ⑤)

○ 역합병으로서 합병 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 2006. 2. 9.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 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고,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으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 초과 시에도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⑬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법법 §48의 2)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 충족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

* 법인세법 46조 제1항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분할법인이 분할·분할합병 후 소멸 등

II.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①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조특령 §23)

○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 12. 31.까지 연장하였으나,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

* 2006.12.30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2007. 12. 31까지 일몰기한 1년 재연장(공제율 7% 유지)

■ 참 고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변천

적용 기간	2000.1.1 ~2000.6.30	2000.7.1 ~2000.12.31	2001.1.1 ~2003.6.30	2003.7.1 ~2004.12.31	2005.1.1 ~2005.12.31	2006.1.1 ~2007.12.31
공제율	7%	미실시	10%	15%	10%	7%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조특법 §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에 선박관리업, 분노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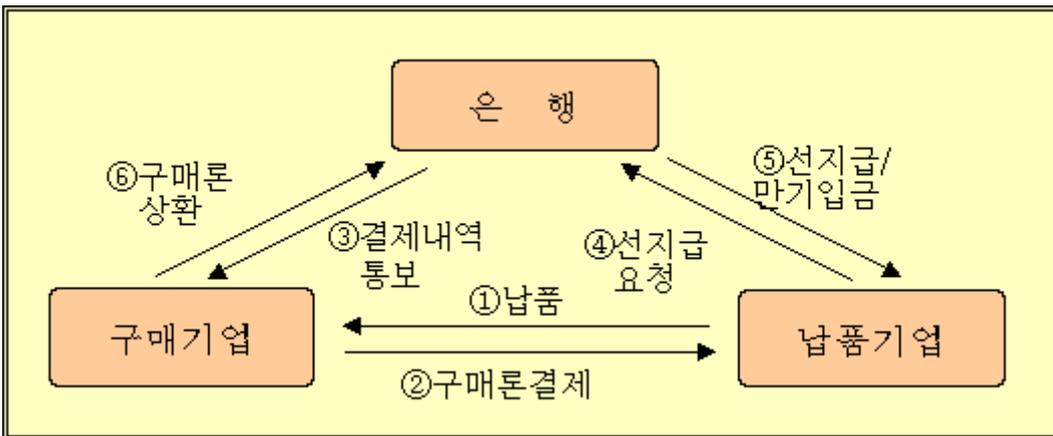
③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 (조특법 §7의 2)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인 네트워크론 거래금액에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를 추가

■ 참 고

• 네트워크론(구매론) 제도 개요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제도



④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특법 §33)

- 2008. 12. 31. 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으로 업종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 참 고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부지(장부가액 15억원, 시가 30억원)를 처분하고 물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토지(20억원)와 기계장치(10억원)를 취득한 경우

- ☞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년째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⑤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특법 §34)

- 2007. 12. 31. 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당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 협약에 채무면제액 및 사업용 부동산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 계획(부동산 양도 후 3개월 내 상환)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⑥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특법 §41)

- 2007. 12. 31.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당해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⑦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특법 §47의 4)

- 내국법인이 2007. 12. 31. 까지 합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 참 고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 사례

▶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게 된 경우

- 물류센터 1개를 처분(장부가액 5억원, 합병당시 시가 9억원, 처분가액 10억원)하고 1년내 물류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취득(9억원)한 경우

☞ 종전에는 양도차익(5억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2006. 1. 1. 이후부터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3년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과세

구 분	분할과세 대상금액	과세방법
합병법인(A)이 당초 보유하던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10억원 - 5억원) × (9억원 / 10억원) = 4.5억원	양도차익(5억원) 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상당액(4.5억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 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한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9억원 - 5억원) + (10억원 - 9억원)] × (9억원 / 10억원) = 4.5억원	합병평가차익(4억원)과 양도차익(1억원)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상당액(4.5억원)을 양도일 속하는 사업연도종료 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⑧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조특법 §104의 5)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회계법인’ 추가

* 현재 세무사와 세무법인에 대해 제출자별 100만원 한도(세무법인은 3백만원)로 세액공제 허용

⑨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등 (조특법 §63 의2)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경우에만 지방이전감면대상에 포함했으나 기업의 지방 이전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2008. 12. 31.로 3년 연장

○ 지방이전 감면대상 제외소득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추가

* 기존에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⑩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 (조특령 §104의 7)

○ 톤세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 2006.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⑪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추가** (조특법 §127 ⑧)

○ 영화제작업 등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벤처기업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문화사업준비금’과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준비금 규정 중복적용 배제

⑫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조특법 §135)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타법인 주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폐지

■ **참 고**

- 타법인 출자 규제 관련 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	자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상법 §342의 2).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등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 다만, 회사의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시는 제외
출자총액 제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등을

⑬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 (조특법 §136, §137)

<p>○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u>접대비한도액 차등적용 규정 폐지*</u>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일반법인의 20%만 인정</p> <p>○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u>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 적용 규정*</u> 폐지 * 일반법인의 경우 광고선전비를 전액 손비인정 하나,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2% 한도 내에서만 광고선전비를 비용 인정</p> <p>※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 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p>

⑭ 일몰 도래로 올해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구 분	주요 감면 내용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구조특법 §10의 2)	해외파견비의 7% 상당액 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특법 §12 ①)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50% 감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구조특법 §30의 4)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100만원 공제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구조특법 §104의 3)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별 첨] 법인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 전산분석 사전안내 항목

분 석 항 목	분 석 내 용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분석	2006년 중 자료상 혐의자, 위장가맹점 등과의 거래내역을 사전안내하여 자기시정기회 부여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2006년 중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대손처리한 채권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내역 분석
신설법인 부당감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방지 안내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
재평가토지 양도법인 안내	2006년 중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검색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안내
국외투자수익 누락 여부 분석	외환투자 이후 2005년말 현재 3년간 투자수익이 없거나 투자수익을 과소계상한 혐의 법인 분석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3개 사업연도 이상 신고 소득률이 30% 이상 하락한 법인 분석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요건 해당 여부 분석
세무조정 유보금액 차이 분석	2003~2005년 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과세이연에 대한 유보사항 차이분석 및 세무조정 누락방지 안내
표준재무제표의 성실 작성 여부 분석	2005년 중 표준대차대조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적정분류 여부 분석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2003~2005년 중 일용급여 원천세 수정신고, 부가세 경정청구 등을 이용한 소득 조절혐의 분석
외부조정 이행여부 분석	2005년 외부조정대상법인 중 외부조정 미이행 법인에 대하여 외부조정 의무 이행 안내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정 계상 여부 분석	2004~2005년 중 회사계상 인정이자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을 비교 분석
접대비 변칙처리 여부 분석	2005년 중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 성격의 카드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혐의 분석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안내	2006년 1월 ~9월 중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분석
합병법인의 영업권 부당상각 방지 안내	2005년 합병법인 중 영업권을 계상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상 영업권계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각하도록 안내
조세감면 등 중복적용 법인 분석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2005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은 혐의법인을 추출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분석	2005년 중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소득조절을 위해 감가상각하지 않은 의제상각 적용법인 분석
국외기술료 수입누락혐의 분석	2005년 중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계상하지 아니한 혐의법인 추출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분석	2005년 중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법인 분석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2005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타소득이 있거나 장기하 해외체류 등)가 있는 법인 분석
접대비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2005 사업연도의 부속명세서상 접대비와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계상 적정여부 분석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 안내	20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항목을 2006년에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외화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2005년~2006년 제1기 중 수출 통관자료의 원화금액 합계액과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합계액을 비교하여 일정비율 미달법인 안내
음식·소매업 현금매출 분석	2005년~2006년 제1기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기타분 부가세 매출액을 분석하여 현금매출 부가세과표가 낮은 법인 추출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건축자재·화장품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자료와 수입상품 매출액 및 신고소득을 비교·분석
보조금 익금계상 누락방지 안내	2006년 중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한 법인 현황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분석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안내
재고자산 차이분석 안내	손익계산서상의 전년도 기말 재고액과 당기 기초 재고액이 일치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매출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분석	2005년 12월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록법인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안내